

강화군 복지재단 지침(발령)

발령번호 제5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

2. 개정이유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(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안내)와 관련 당해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조항은 생략함에 따라 재단 지침 일부개정

3. 주요내용

- 제6조(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대상 업무 지정 등) 조항 삭제
- 제7조(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및 조치) 조항 삭제
- 제8조(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·관리) 조항 삭제
-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[별표] 및 [별지 서식] 삭제
 -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대상 업무 [별표1] 삭제
 -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서 [별지 제7호 서식] 삭제
 -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[별지 제8호 서식] 삭제
 -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[별지 제9호 서식] 삭제

「강화군 복지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지침을 발령한다.

2026년 5월 20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

